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1. 11. 17.(수) 10: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 현 부위원장 (1인)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 현 부위원장께서는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한상혁 위원장

-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된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웠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님들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큰 착오 없이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열흘 정도 격리시설과 병원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확진부터 시설로 이동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크신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대본 회의를 비롯한 코로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피상적으로만 알던 부분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방역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제가 없는 동안 고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9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50-156)

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50-15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나>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보고받고 논의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0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6월 8일 「방송법」 개정에 따라 9월 23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9월 24일 이후부터 11월 10일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 검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비대상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임업무 근거 신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인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인정,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 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5> 입법예고안 중 변경사항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법제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 업무와 대상을 「방송법」·「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복잡한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게재 예정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전파법」 제7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6월 8일 「전파법」 개정에 따라 9월 23일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9월 24일 이후부터 11월 10일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검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규제심사비대상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와트’를 ‘W’로 바꾸는 등 표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파법 시행령」의 전체적인 용어 체계를 감안할 때 해당 부분만 바꾸기 어려워 미반영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위임업무 근거 신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인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국 개설·변경 허가, 방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운용정지, 허가 취소시 청문,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5> 입법예고안 중 변경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법제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등 일부를 수정하여 방송통신사무소 업무와 대상을 「전파법」·「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복잡한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 게재 예정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 의견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입니다.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9월 14일과 10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 등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 9월 9일부터 제도정비반 등을 구성해서 하위법령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 19일부터 초안에 대해서 앱 개발사 협·단체 간담회 및 분야별 앱 개발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11월 2일까지 약 80여개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까지 제도정비반에서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위법령안을 반영하였습니다. <4> 시행령·고시 등 제·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를 위해 시행령 제30조의9를 신설합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이용자의 보호 규정 등을 마련하고,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 제공 시 미성년자 보호, 해지수단 제공 및 해지제한 금지 등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제30조의10을 신설합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대상과 내용을 선정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고려해서 방법과 절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앱마켓 매출액, 이

용자 규모, 불만 발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앱 마켓사업자,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그리고 최종 이용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자료 재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7의2]를 신설하고 [별표1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지행위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현행 과태료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 부과합니다. <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별표4]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를 제정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8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그리고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인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그리고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정지·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결제방식 자체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또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규제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조항을 마련해서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9호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는 앱 마켓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 앱 마켓 운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호 삭제하는 행위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제한하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마>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별표6]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로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시행령 [별표4] 제8호~제10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8호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은 거래상 지위·강제성·부당성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 즉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그리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대안 판매경로라든지 데이터의 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결제방식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안 등 예외사유는 적용을 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호와 제10호 심사를 지연

하는 행위와 삭제하는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지연과 삭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실제적인 공정성과 지연/삭제와 관련한 기준·사전고지 여부·불만처리 절차의 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인 훈령의 개정입니다. 신설 금지행위의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 조항 적용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하여 주시면 곧바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시행령 개정안, 고시 제·개정안과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수렴 내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6페이지에 보면 거래상 지위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이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해당한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저희가 앱 마켓 기준 사업자를 5개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윈스토어, 갤럭시 그다음에 LG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윈스토어까지 3개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국내 사업자는...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윈스토어가 해당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3개 정도가 이 규제 틀 안에서...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작년 말 통계데이터 기준으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입니다. 지난 9월 31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글은 지난 11월 4일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며, 제3자 결제 시 외부 수수료를 구글플레이 결제 대비 4%p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다행이나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자 간에 원만히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1월 8일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과 상생협력식을 갖는 등 일부 관계개선의 모습도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법률 준수 의지가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 간 협의가 잘 되게끔 우리 방통위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애플은 현재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웹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 다른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현재의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불공정한 행위로 법정 다툼도 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플이 이용자들의 제3자 결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자사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번 인앱결제 강제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챙길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앞서 말한 주요 쟁점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워낙 다양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시행령 내용이 당초 국회 입법내용을 넘어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이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해 우리 방통위가 입법내용과 취지를 존중하여 중심을 잘 잡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상행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떤 규제의 틀을 만들 것이냐와 관련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법입니다. 말하자면 룰세팅(rule setting)을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룰세팅의 최전선에 저희 방통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방식을 얼마나 빨리 습득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오느냐가 우리의 책무였다면 지금은 선진국들에 앞서서 우리가 룰세팅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특히 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최근 KT의 통신장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법과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KT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의 기준을 통신장애의 시간, 통신장애가 있었던 만큼 통화료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장애로 인해 일어난 영업의 손실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것이 통화료 6,000원, 7,000원 깎아준다고 될 문제냐?” 그런 굉장히 큰 반발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앱결제 문제도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인앱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죽고 살코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사무처에서는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난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정비반을 운영하면서 앱마켓사업자와 또 앱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와 함께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사무처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한 세미나'에 참석한 인도, 프랑스, 미국 이런 관련자들도 공통적으로 "한국의 입법조치는 기울어진 앱 경제 공정성을 바로 잡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업적이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참고하고 벤치마킹할 귀중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또 한 가지 당부 내지 숙제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앱결제의 강제방지법 통과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구글과 애플의 대처가 다른 국가에서도 저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애플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또 구글의 외부 결제수수료 논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개정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만한 입법안과 후속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고 법 개정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입법예고기간에 잘 검토해 주셔서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로써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 집행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앱마켓사업자들이 우회적 방법이나 의도적 지연행위를 통해 법 취지를 훼손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앱마켓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입법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담은 이번 하위법령안이 서둘러 개정,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을 시작으로 제·개정 절차를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그동안 거대 앱마켓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정책에 종속되었던 콘텐츠사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에 있어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속도감 있게 이번 안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직원 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강조해 주신 것처럼 법안의

마련, 그리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해외 모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면서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다함께 힘을 합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기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폐회】